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72호  
2024. 8. 30.

- | 2025년 정부 예산, SOC 부문만 삭감
- | 기업형 임대 확대 방안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2025년 정부 예산, SOC 부문만 삭감

- 전년 대비 3.6% 감소한 25.5조원, 경기 불확실 속 성장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 2025년 정부 예산(안) 총 677.4조원

-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677.4조원으로, 전년 대비 3.2%(20.8조원) 증가함.
  - 2025년 예산안은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나, SOC 분야의 예산만 감소함.

<표 1> 2025년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B-A)
◆ 총 지 출	656.6	677.4	20.8 (3.2%)
1.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2. 교 육	95.2	98.5	3.3 (3.5%)
3.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4. 환 경	12.5	13.0	0.5 (4.0%)
5. R&D	26.5	29.7	3.2 (1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7. SOC	26.4	25.5	-0.9 (3.6%)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9%)
9. 국 방	59.4	61.6	2.2 (3.6%)
10. 외교·통일	7.5	7.8	0.3 (3.7%)
11. 공공질서 및 안전	24.4	25.1	0.7 (2.6%)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자료 : 기획재정부.

## 2025년 SOC 예산,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중심 25.5조원

- SOC 예산은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K-Pass, 미래 모빌리티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둬.
  - (연결성 극대화) 도시철도 투자 확대 및 광역급행철도 정상 개통 지원, 고속철도 병목구간 선로 확대 및 지역 국도망 확충,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 예정임.
  - (교통서비스 개선) K-패스 시행, 다자녀 할인 강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 개선,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 및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확대, 배수시설 정비 예정임.
  - (지역발전 저해 요인 해소)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저층 주거지 개선, 지역산단 경쟁력 강화,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 지역 하천 정비 확대 예정함.
  - (산업 육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확대 및 도심항공(UAM)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 OSC 및 무인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지원,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예정임.

<표 2> 2025년 SOC 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비고
도로부문	79,779	71,998	· 고속도로(18,272→10,520억원), 국도(18,530→17,731억원)
철도부문	81,021	70,016	· 광역철도(12,156→9,131억원), 도시철도(5,434→6,499억원)
항만수자원부문	42,395	42,797	· 국가하천정비(6,627→6,794억원), 지하수관리(458→520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	18,512	20,188	· 뉴·빌리지(930억원), 수소도시지원(297→444억원)
물류 등 기타	30,729	33,515	· K-패스(735→2,375억원), 준공영제(998→1,638억원)
항공·공항·산단	11,986	16,311	· 가덕도공항(5,363→9,640억원), 제주2공항(173→236억원)
합계	264,422	254,825	전년 대비 -3.6%

자료 : 기획재정부.

## 금리 인하 불확실성 큰 가운데 인프라 소득 분배 효과 커

-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물가 상승 재확산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022년 9월 미국(3.125%)과 우리나라(2.5%)의 금리가 역전된 이후 현재 1.875%p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미루었던 상품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우리나라의 동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한편, 고금리의 지속은 생산비용 증가 및 수요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둔화를 넘어 위축으로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는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 하락, 십분위 분배율 개선함.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도 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1)
-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의 2018년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오며, 실직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함. 2)
-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SOC 분야 지출 1조원당 지니계수(Gini coefficient)<sup>3)</sup>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sup>4)</sup>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 World Bank(2014)는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고, 인프라 투자가 소득 불평등 개선과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5)
- OECD(2015)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인프라 공급 확대가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의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sup>6)</sup>하였으며, 2016년 정부 재정에 기반한 지나친 복지지출 확대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힘. 7)

## ■ 2025년 SOC 예산, 비용액 등 감안 시 부족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6.8조~58.4조원 규모로 2025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 시 -0.8조~0.7조원 과부족한 것으로 추정됨.
- SOC 투자의 2025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7.5조원 내외의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2.1~2.2%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6.8~58.4조원으로 예상 지출 규모 대비 -0.8조~0.7조원이 과부족한 수준임.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소득 불평등과 인프라 투자」, 『건설동향브리핑』 참조.

2) 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 2018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February 2018 Chapter 4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Boost Economy”.

3)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임.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로 표현되는데, 값이 ‘0’ (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 (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4)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분자로 하고 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분모로 하여 나눈 비율로, 소득 분포 상태를 나타냄.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것을 의미함.

5) World Bank (2014), 「Infrastructure, Growth, and Inequality : An Overview」 참조.

6) OECD(2015),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 Policy Tools to Achieve Balanced Growth in G20 Economies, Framework Working Group」 참조. “Especially in emerging G-20 economies, provision of infrastructure, health c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reforms can play a role in reducing inequality.”

7) OECD(2016), 「The Effect of the Size and the Mix of Public Spending on Growth and Inequa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p.1344 참조.

〈표 3〉 2025년 SOC 지출 과부족 규모 분석 및 추정

(단위 : 십억원)

경제 전망 기관	가정		A.적정 지출 규모 (전망치 반영)	B.예상 지출 금액(=a+b+c+d)				E.과부족 금액 (=B-A)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a.정부 지출 (국가재정 운용계획)	b.지방정부 지출 (예측)	c.민간투자 지출 (예측)	d.공기업 투자 지출 (예측)		
한국은행	2.1%	2.1%	56,831	57,567	25,500	17,207	4,139	10,721	+735.5
기획재정부	2.2%	2.1%	58,423	57,584	25,500	17,207	4,139	10,738	-838.8

- 한편, SOC 예산의 2015~2022년 연간 발생하는 불용액은 평균 5,04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3년 건설보상비 및 건설비의 불용액은 3,324억원에 이르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영국은 2022~2023년(회계연도)부터 SOC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기후변화 대응, 지역 간 성장 지원을 계획하며, 공공 인프라 투자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 대비 50% 상향함.
  -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NIC)는 공공투자 규모를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00억 파운드에서 2030년대와 2040년대에는 300억 파운드로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최근 영국 정부는 2022~23년부터 2024~35년(회계연도 기준)까지 약 300억 파운드로 늘리기로 함.
-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기 위축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SOC 예산 확대를 통한 경기의 선순환 유도 및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안전 도모가 필요함.
  - SOC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경기 선순환 유도에 기여하는 만큼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의 도모가 필요함.
  - 또한,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
- 한편, SOC 분야 결산액을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실정임. 정부 건설 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투자 집행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함.
  - 2015~2022년 SOC 분야 불용액은 총 4.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확대되고 있음.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엄근용(연구위원·kyeom@cerik.re.kr)

## 기업형 임대 확대 방안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기틀 마련됐으나 품질 및 서비스 수준 확보 필요 -

### ■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담당, 그중 개인이 90% 이상

- 민간임대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며 법인의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이창무, 2014).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과거에도 기업형 임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음.
  -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뉴스테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분양 전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지며 3년 만에 폐지됨.
- 뉴스테이의 후신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공급이 부진한 실정임.

### ■ 정부,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방안 제시

- 먼저 사업모델을 유형화해 유형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함.
  - 사업모델은 ① 자유행, ② 준자유행, ③ 지원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함.
  - 인센티브가 많은 유형은 공적의무도 함께 강화하고, 공적의무를 적게 부담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준도 낮춤.

<표 1> 사업모델별 임대료 규제 적용 기준

구분	자유행	준자유행	지원형
계약갱신청구권(2+2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	○	○
임대보증 가입,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	○
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	○	○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95%)	×	×	○
임대료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	×	×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	×	×	×
임차인 변경 시에도 상승률 제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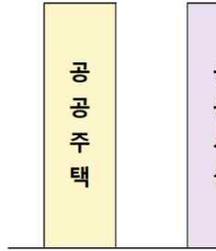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 임대료 규제 완화 방안은 유형별로 상이함.
  - 현재 적용 중인 임대료 규제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임차인이 변동할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률 5% 상한 등이 있음.
  - 먼저 자유휴형은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함.
  - 준자유휴형은 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상한은 적용하지만, 그 외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지원형의 경우 준자유휴형 규제에 시세의 95% 수준인 초기 임대료 기준을 적용함.
- 세제 지원 방안은 크게 자유휴형과 그 외 유형에 따라 다름.
  - 공통적으로 법인 중과세제 적용을 배제함. 임대임대기간(20년)과 임대료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보유함에 따라 야기 되는 중과세제를 적용하지 않음.
  - 자유휴형이 배제되는 혜택은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 감면이며 주택 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함.
- 전용 PF 보증, 기금 출자 및 용자 등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함.

## ■ 2035년까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통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저밀 노후청사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고,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임대주택을 공급
  - 입체복합구역은 올해 8월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 중 하나로 기반시설 복합화 시 활용 가능한 구역임.
  -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 최대 200%, 건폐율 최대 150% 완화가 가능해 신축 청사 상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만약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의 120%를 상향해 임대주택 등 복합용도 고밀 청사 공급 가능함.
- 임대주택 유형은 원룸 등 소형주택에서부터 중형 아파트까지 다양화해 실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할 계획임.

<그림 1>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모델(예시)

고밀복합형		지역허브형		공간혁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공서 등 공공청사</li> <li>▶ 공유형 임대주택</li> <li>▶ 취업준비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li> <li>▶ 돌봄 특화주택</li> <li>▶ 영유아 양육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업무시설</li> <li>▶ 1~2인 맞춤형 주택</li> <li>▶ 사회초년생, 신혼부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 수직고밀화</li> <li>▶ 중형 아파트</li> <li>▶ 유자녀 가구</li> </ul>		

자료 :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하부에는 기존 기능에 보태어 현재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기반시설을 추가함.

- 영·유아 임차인 특화를 위한 어린이집,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 로봇충전소 등

**■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임대주택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 확보 방안 필요**

● 기업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모델로 적합함.

- 일본 등 선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통한 매달 현금 흐름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모델임.

-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등 해소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자금구조를 짠 만큼 임대주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구상해야 하며 이때 정부의 저리자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최소 서비스 수준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 있으며, 반대로 임대 상품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매매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요구됨.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8)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지난 약 1개월(7.22.~8.26.)간 입법부에서는 총 1,077건의 법안이 발의됨. 동 기간 신규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산업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이 재발의 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사고 관련 소화설비 강화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복수 발의됨.
- 그 외 최근 계속된 건설 물가 상승의 여파로 민간공사의 공사비 정상화와 관련된 법률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주목해야 할 법안임.

## 이슈 1: 정비사업 시행 ↔ 시공자 공사비 갈등 해소의 물꼬 기대

- ◎ 2021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건자잿값 및 노임 상승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한 공사비 산정 및 합리적 공기연장 비용 지급,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더불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필요성 등이 최근 몇 년간 우리 산업 내에서 활발히 요구·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 이와 관련하여 민간공사 시장의 중요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정비사업 또한 그간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심화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그간 정부는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율하여 문제 해소에 나섰으나,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검증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함.
-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입법 발의됨.
  -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02481호)의 경우 현행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이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 최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판단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 반면,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03166호)의 경우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외에도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제안함.
    - \* 첫째,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내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 발생 최소화를 꾀함(안 제29조).

- \* 둘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여 공사비 현실화를 꾀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조의5 및 제101조의6).
  - \* 셋째,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제02481호)과 같이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분쟁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 등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함(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
- ◎ 발주자와 시공자 간 최근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은 공사비 산정의 기준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 연관 제도와 절차의 불합리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나, 그간 상대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거래 영역이기에 계약 자율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규율이 부재하였던 민간공사(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입법안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른 개정을 통한 관련 갈등 및 분쟁 해소의 물꼬 역할을 기대함.

## 이슈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기업 우대 법률 추가 입법

- ◎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그간 중앙정부는 공공공사 물량 배분(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 중심의 제도를 마련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통해 지역건설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일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입법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대 입법 내용을 담고 있음.
  -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2641호)의 경우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의 경우 또한 해당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의 경우 이와 달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안임(안 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 그간 지역건설기업 조달 우대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 외에도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법률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 지역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 근거 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한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 관련 법률 근거가 부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신항만 건설 관련 지역기업 우대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안 제21조의6 신설).
- ◎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러한 사정은 지역 내 위치한 대다수 영세 중소 건설기업일수록 더 큰 사항이기에 산업을 육성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조달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지역건설기업을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이러한 입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이슈 3: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입법 재추진

- ◎ 작년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23.5.)의 신속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지되었음.
- 당시 정부는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 돌려 드릴 것"이라 언급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규제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함.

####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23.5.)

법안명	주요 내용	소관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강화</li> <li>•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강화</li> <li>•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li> <li>• 하도급 관련 의무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li> <li>• 건설현장 불법행위 규정(부당금품 수수,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공사방해 등) 및 신고포상제 도입</li> </ul>	국토부
「건설기계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를 이용한 ①공사방해, ②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시 제재</li> </ul>	국토부
「사법경찰 직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li> <li>* (건설산업기본법) 불법하도급, 등록 위반, 채용 및 장비 강요, 공사방해 등</li> <li>* (건설기술 진흥법) 품질·안전규정 위반, 감리·감독 위반, 건설 Eng. 부실조사 등</li> <li>* (건설기계관리법) 기계 등록위반, 무단개조, 운송거부, 부당금품 수수 등</li> </ul>	법무부
「채용절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과태료 → 형벌)</li> </ul>	고용부
「노동조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他노조 및 근로자, 사용자의 권리 침해, ②대체근로자 및 사업장 점거 등 제도 개편 근거 마련</li> </ul>	고용부

- ◎ 이와 관련하여 최근 22대 국회에서는 모두 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2건)이 재입법 됨.
- 먼저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 제02739호)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건설 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 제02440호)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3~5배) 도입을 제안함(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제5항 신설).
-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손괴를 발생 시켰으면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며,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여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임.

-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 제02501호)의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수준 강화 목적의 법안이 발의됨.
  - \* 첫째,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 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도급자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 \* 둘째, 원도급자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시함(안 제29조의2 제1항).
  - \* 셋째,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하도급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불법하도급 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함(안 제29조의3제1항).
  - \* 넷째,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하는 강한 처벌 규정을 제안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 \* 다섯째,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자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3 Strike-Out),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2 Strike-Out),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력히 규정하는 안을 제시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등)
- ◎ 정부와 국회(여당)는 모두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강화와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금까지 살펴본 입법안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 ◎ 허나,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규제의 목적(산업 건전화)을 달성치 못하고 반대 효과(산업 위축 및 편법 심화)를 가져오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고려(예: 발주자 및 제3자 불법하도급 감시 기능 강화 및 명확한 의무 부여 등)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따르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이슈 4: 우려하던 상황의 직면,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추가 입법

- ◎ 제도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여러 논란 속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행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연동제의 대상으로 규율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제도임.
- ◎ 이와 관련하여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 제02927호)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오세희 의원·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전기 등 에너지 비용의 연동제 대상 포함)과 달리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운반비 또한 연동제 대상으로 규율 하자는 안을 제안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 부담 가중을 주요 입법 개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 입법안과 같이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운반비를 주요 경비로 하여 주요 원자재와 주요 경비 모두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건설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우려되는 상황임.
  - 현재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레미콘 제조사는 매년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을 통해 운반비 인상이 이루어져 왔고 시차를 두어 순차적으로 레미콘 비용에 반영되는 구조임.
  - 허나 레미콘 가격은 협상기준 단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실제 시장가격이 별도 형성되고 있고 최근 건설업황 침체로 레미콘 가격이 협상기준 단가보다 시장에서 낮게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의 즉각적 반영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더욱이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레미콘 제조사 간의 갈등은 제한된 시간 내 제품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대체 불가능성을 활용하여,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지입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임에도 매년 운반비 인상을 위한 파업을 강행하는 등 단체협상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한 위반)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를 통해 해당 집단행동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인 건설사에게 입법을 통해 전가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 결론적으로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레미콘 제조사와의 갈등과 연계된 레미콘 가격에 대한 레미콘사와 건설사와의 반복되는 갈등은 오랜 기간 논의된 믹서트럭 할당제 및 믹서트럭 신규 등록 억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중간재인 레미콘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성 등과 연계하여 상호 협력적 수준에서 종합적 개선 노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입법을 통한 비용 부담의 대상을 시장 구조의 고려 없이 전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되짚어보아야 함.

#### 이슈 5: 전기차 화재사고로 촉발된 입법 홍수… 추가 건설비용 부담으로 연계?

- ◎ 최근 국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남 금산 공용 주차타워 등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유 의무화 또는 소화설비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우선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한 12개 법률을 입법 제안함.
  - 이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및 옥내 주차장에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 설비,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관련 입법안은 총 9개에 달함(후면 참고)
- ◎ 최근 건축물 주차구역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의무적 화재 설비의 설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추가 건설비용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 및 소방시설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입법 과정을 통해 모색되기를 희망함.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7.23.~'24.8.26)

법률명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314호(김주영 의원 등 11인)] ('24.7.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한계로 대규모 사업추진 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타 지역과 동일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li> <li>- (제안이유②) 특히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경제 요충지로 교통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각종 규제 등으로 교통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 필요</li> <li>- (제안방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li> </ul> </li> </ul>
「건설기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330호(홍기원 의원 등 10인)] ('24.7.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직접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li> <li>- (제안방향)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li> </ul> </li> </u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424호(강준현 의원 등 12인)] ('24.7.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하도급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현행법 제35조의2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술 탈취로 피소된 당사자 기업(원도급자)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기술 탈취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 시효 기산점을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반복</li> <li>- (제안방향①) 공정위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일 통보받은 날을 그 기산점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2조제4항제1호)</li> <li>- (제안방향②)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법원이 이 법 위반사실과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신설)</li> </ul> </li> </ul>
「건설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440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4.7.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규정 중이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 필요</li> <li>- (제안방향)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여(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461호(서범수 의원 등 12인)] (‘24.8.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재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건축자재의 적합 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을 확인·점검해야 하고, 리모델링 감리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는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고의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령의 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실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부재해 부실감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 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3조제5항·제6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li> </ul> </li> </ul>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481호(민홍철 의원 등 10인)] (‘24.8.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는 해당 분쟁이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최소화의 한계 발생</li> <li>- (제안방향)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규정(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li> </ul> </li> </ul>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501호(엄태영 의원 등 12인)] (‘24.8.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li> <li>- (제안이유②)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 필요</li> <li>- (제안방향①)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 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도급자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li> <li>- (제안방향②)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관리의무 부여(안 제29조의2 제1항)</li> <li>- (제안방향③)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불법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를 신설(안 제29조의3제1항)</li> <li>- (제안방향④)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li> <li>- (제안방향⑤)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자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567호(임의자 의원 등 10인)] ('24.8.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해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개선</li> <li>- (제안방향) 현행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li> </ul> </li> </ul>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17호(이훈기 의원 등 11인)] ('24.8.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에 걸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li> </ul> </li> </ul>
「골재 채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23호(김은혜 의원 등 11인)] ('24.8.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 경로 파악·관리 필요성 대두</li> <li>- (제안이유②) 골재의 품질검사 중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기에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 필요</li> <li>- (제안이유③)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 파악·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 부여 필요성 요구</li> <li>- (제안방향①)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li> <li>- (제안방향②)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 부여(안 제22조의5 신설)</li> <li>- (제안방향③)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근거 마련(안 제52조제4항 신설)</li> </ul> </li> </ul>
「국가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41호(윤한홍 의원 등 13인)] ('24.8.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상향 필요</li> <li>- (제안방향)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 조정 (안 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신항만 건설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42호(윤한홍 의원 등 11인)] ('24.8.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 지역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 근거 조항을 운영 중이나, 동일한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 현행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역차별 발생</li> <li>- (제안방향)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 우대 근거 조항 마련 (안 제21조의6 신설)</li> </ul> </li> </ul>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82호(김선교 의원 등 11인)] ('24.8.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li> <li>- (제안방향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폭염·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 (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li> </ul> </li> </ul>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84호(서범수 의원 등 10인)] ('24.8.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신속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선제적 대응 필요</li> <li>- (제안방향)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안 제2조제20호)</li> </ul> </li> </ul>
「하도급 거래 공평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731호(김상훈 의원 등 11인)] ('24.8.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하도급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원도급자가 문제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부당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안 제3조의4제3항 신설)</li> </ul> </li> </ul>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738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4.8.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안 제34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736호(권영세 의원 등 11인)] (‘24.8.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권한,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제도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①) 국토교통부에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시공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안 제6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②) 국토교통부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규정(안 제68조의3제2항)</li> <li>- (제안방향③) 국토교통부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이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④)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⑤)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⑥) 국토교통부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2조제5항 신설)</li> <li>- (제안방향⑦)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li> <li>- (제안방향⑧)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li> <li>- (제안방향⑨)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3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 신설)</li> </ul> </li> </ul>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739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4.8.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를 고려</li> <li>- (제안방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li> </ul> </li> </ul>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781호(문정복 의원 등 10인)] (‘24.8.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최근 주택건설 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임에 반해 20년 이상 유지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850호(박해철 의원 등 11인)] (‘24.8.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li> </ul> </li> </ul>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859호(박해철 의원 등 13인)] (‘24.8.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사업주의 조치 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 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li> </ul> </li> </ul>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875호(최은석 의원 등 10인)] (‘24.8.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의 경우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개선</li> <li>- (제안방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 부여(안 제5조 및 제52조)</li> </ul> </li> </ul>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927호(송재봉 의원 등 19인)] (‘24.8.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li> <li>* 법안 발의 사유 : 레미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 부담 가중</li> <li>- (제안방향)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 (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li> </ul> </li> </ul>
「건설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935호(민홍철 의원 등 10인)] (‘24.8.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 활용도 제고가 제한적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 유도 (안 제26조제3항 등)</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010호(김승수 의원 등 10인)] ('24.8.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 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부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게차 어린이 사상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의 요구 증대 및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 제기</li> <li>- (제안방향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li> <li>- (제안방향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등)</li> </ul> </li> </ul>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028호(정부)] ('24.8.20.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약관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 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개별 법률(6개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 조정신청 각하 사유, 분쟁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분쟁조정 활성화 및 효율화 유도 필요</li> <li>- (제안이유③)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자문제도 및 간이분쟁 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li> <li>- (제안방향②)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li> <li>- (제안방향③)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제도 정비(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li> </ul> </li> </ul>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065호(황희 의원 등 13인)] ('24.8.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50조의3 신설)</li> </ul> </li> </ul>
「국가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077호(박상웅 의원 등 12인)] ('24.8.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조달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 상태 등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미고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153호(권영진 의원 등 10인)] ('24.8.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공사 관련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기관 운영 위탁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여 분쟁 조정 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기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기능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건설분쟁 조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관한 현행 조문 삭제(안 제69조제4항)</li> <li>*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에 관해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위탁 여부를 확정하여 규정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9조의3 신설)</li> </ul> </li> </ul> </li> </ul>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166호(권영진 의원 등 10인)] ('24.8.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한편, 신택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 중임.</li> <li>-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공사비 상승을 고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신택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개선 필요 발생</li> <li>- (제안방향①)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안 제29조)</li> <li>- (제안방향②) 신택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 등 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8조)</li> <li>- (제안방향③)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안 제55조, 제66조, 제10조의5 및 제101조의6)</li> <li>- (제안방향④)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7조)</li> <li>- (제안방향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고,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li> <li>- (제안방향⑥) 토지 등 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택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 정비(안 제11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168호(이수진 의원 등 10인)] ('24.8.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폭염, 홍수 등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 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 난해</li> <li>*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협의가 없고, 작업 중지 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 등이 미비</li> <li>- (제안방향)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52조제1항 등)</li> </ul> </li> </ul>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190호(박수민 의원 등 11인)] ('24.8.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건설사업의 수주가 필요한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는 적극적 경영 행위를 할수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 해소 및 해외건설 사업 수주 지원(안 제 104조의33)</li> </ul> </li> </ul>
「도시철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3190호(박수민 의원 등 11인)] ('24.8.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난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2017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과다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 필요</li> <li>- (제안방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6항)</li> </ul> </li> </ul>

## ■ [참고] 전기차 화재 관련 건설 유관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8.26)

법률명	주요 내용
「주차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503호(송언석 의원 등 10인)] ('24.8.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도모 및 주차장 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제6조제5항 신설)</li> </ul> </li> </ul>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14호(김상욱 의원 등 10인)] ('24.8.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기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li> <li>- (제안방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li> </ul> </li> </ul>
「전기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24호(박용갑 의원 등 14인)] ('24.8.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li> <li>- (제안방향①)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li> <li>- (제안방향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옥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광역지자체에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li> </ul> </li> </ul>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25호(박용갑 의원 등 13인)] ('24.8.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나,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기에 이를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더,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의무 부과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신설)</li> </ul> </li> </ul>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690호(박용갑 의원 등 15인)] ('24.8.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지하주차장 등 옥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되기에 이를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 방화셔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763호(구자근 의원 등 10인)] (“24.8.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 발생 가능하기에 이를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제2호 신설)</li> </ul> </li> </ul>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804호(이용우 의원 등 13인)] (“24.8.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소방 인력과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이를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li> </ul> </li> </ul>
「주차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806호(이용우 의원 등 13인)] (“24.8.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에 이를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안 제6조제5항 신설 등)</li> </ul> </li> </ul>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857호(김위상 의원 등 14인)] (“24.8.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이 부재하기에 이를 보완 필요</li> <li>- (제안방향)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안 제49조제6항)</li> </ul> </li> </ul>